

》》》 암벽 주위에서 채석 드릴 작업 중 암벽 일부가 낙반



1. 재해발생개요

○○기업사의 채석장 북쪽 6공구 작업장 내에서 4명의 근로자가 채석 드릴 작업 도중 북쪽 암벽의 암석 일부가 낙반되어 미처 피하지 못한 근로자 중 한 명이 낙반에 끌려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양쪽 다리가 낙반된 암석에 협착되어 부상당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채석장 북쪽 6공구 작업장의 북쪽 암벽 주위에서 4명의 근로자가 채석 드릴 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 당일 오전 11시쯤 암벽의 일부가 작업을 하던 2명의 근로자에게 낙반되어 한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양쪽 다리가 암석에 협착 부상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발생원인

- (1) 작업시작전 작업장의 지형·지질 등의 조사 미실시
- (2) 채석작업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
- (3) 낙반 우려 지역에 안전조치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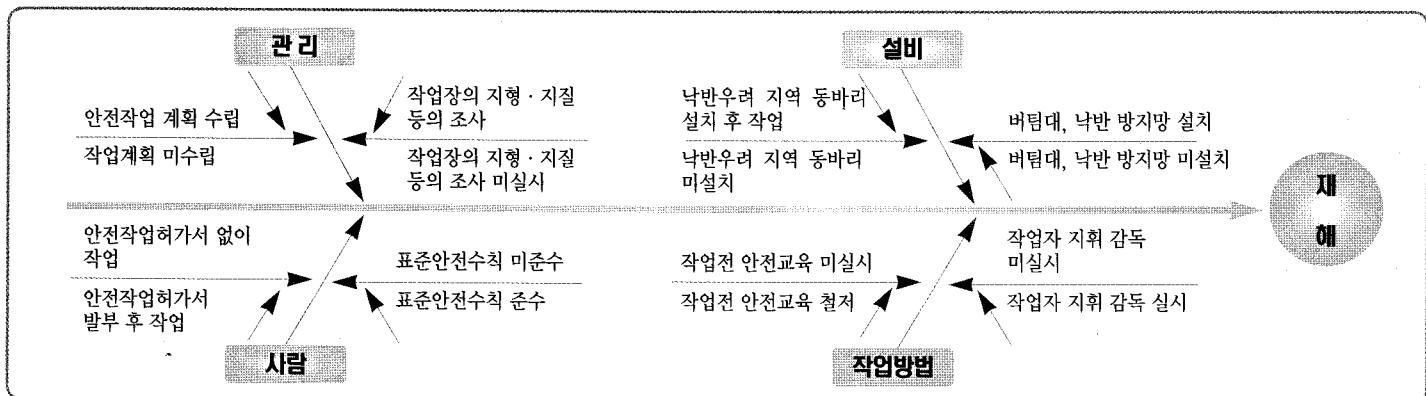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작업시작전 작업장의 지형·지질 등의 상태를 조사 후 작업
- (2) 해당 작업에 맞는 장비·인력·작업순서가 포함된 작업계획 수립
- (3) 동바리, 버팀대 및 낙반 방지망을 설치후 작업

4. 법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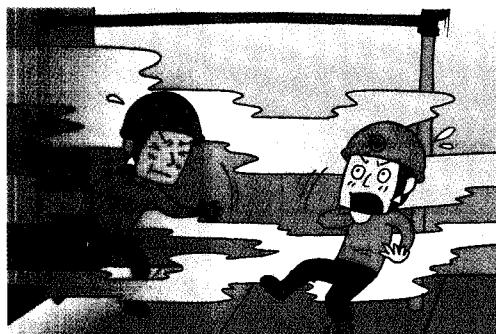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오페수 처리장 내 저수조 슬러지 제거 작업 중 질식

업종	식료품 제조업
기인물	저수조 내 음식물 슬러지
생산품	당면
재해유형	질식
피해정도	인적 물적 사망1명, 부상6명



1. 재해발생개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오페수 처리장의 저수조 슬러지 제거를 위해 근로자 6명이 작업하던 중 저수조 내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내부 작업자 3명 및 보조 작업자 2명 구조 작업자 1명이 부상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사내 오·폐수 처리장 내부의 저수조에 슬러지 제거를 위해 근로자 6명이 저수조 내부로 들어가 음식물 슬러지를 밀대를 이용하여 작업하기 쉽도록 한 곳으로 모우는 작업 중 피자자 1명이 쓰러지고 나머지 3명도 누출된 흉화수소 가스에 의해 중독, 이를 구조하려던 근로자 2명도 중독되어 부상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발생원인

- (1) 작업 전 저수조 내부 유독가스 농도 미 측정
- (2) 작업방법 및 작업안전수칙 미 제정
- (3) 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교육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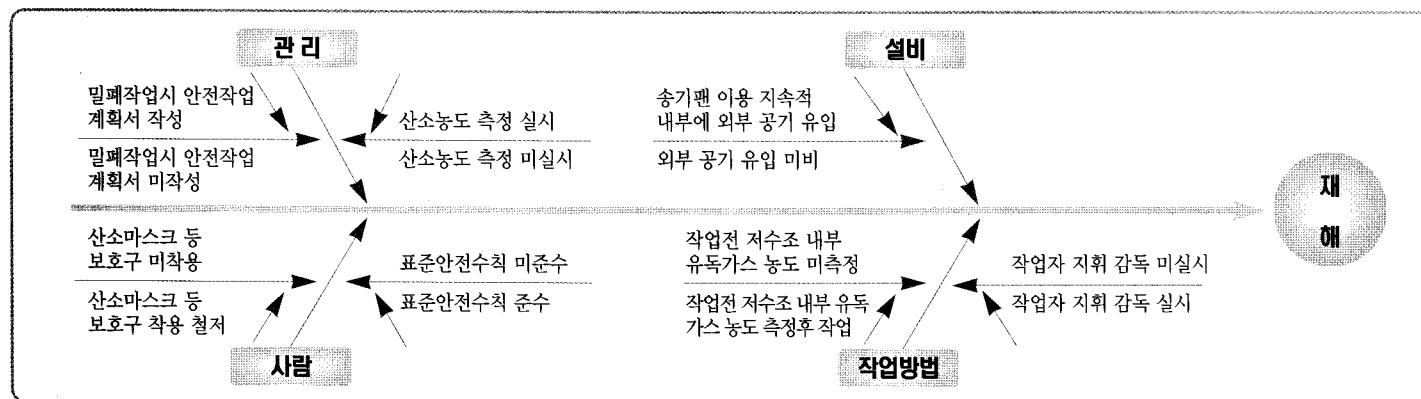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작업시작 전 저수조 내부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실시
- (2)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실시
- (3) 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실시



4. 법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엘리베이터 내 작업 확인 중 추락

업종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엘리베이트 룸
생산품	블록 전선 포설 외
재해유형	추락
피해정도	인적 물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O O(주)내 2258 D/H D-DECK 내부 각 룸에 코밍 MCT(전선포설 후 공간 부분)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해 피제자 외 1명이 작업을 할 장소로 이동 중 D-DK 내부 계단 통로 부근에 조명이 어두워 열려 있는 엘리베이터에 작업 할 것이 있나 확인하려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피제자와 1명이 점심조회를 마치고 작업장내 2258 D/H D-DECK 내부 각 룸에 코밍 MCT(전선포설 후 공간 부분)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해 A-DECK에서 D-DECK까지 외부 계단을 이용해 이동 후 D-DECK 안으로 들어가 작업공구를 챙겨 D-DK 내부 계단 통로 부근에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엘리베이터 안쪽에 작업 할 것이 있나 확인하려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약 10M)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발생원인

- (1) 작업장 조명 확보 상태 미흡
- (2) 엘리베이터 문은 개방된 상태로 방치
- (3) 관리감독자 작업 감독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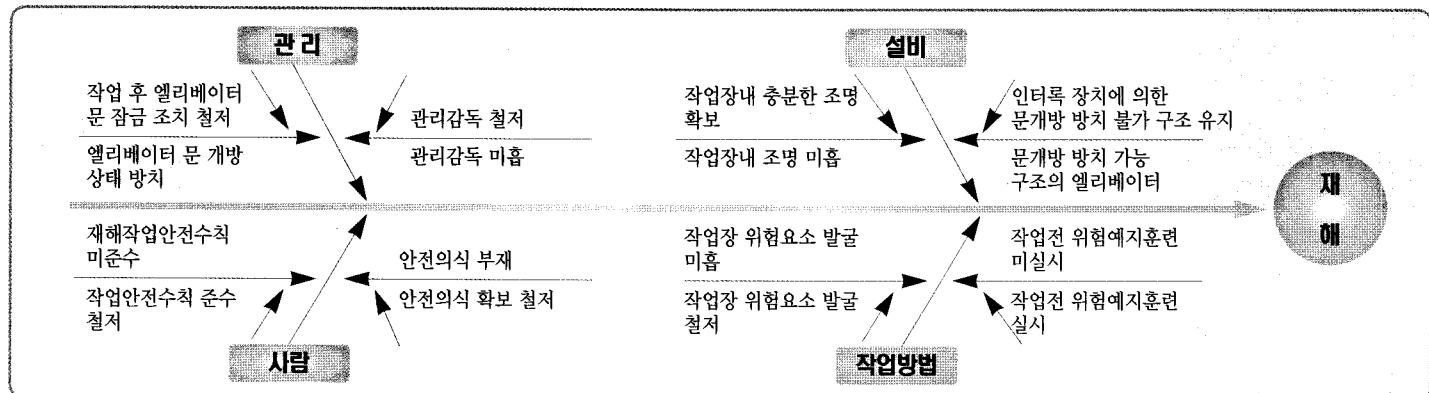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작업장 내 충분한 조명 확보토록 관리
- (2) 엘리베이터 문은 작업이 끝난 후 잠금 조치 실시
- (3) 관리감독 철저

4. 법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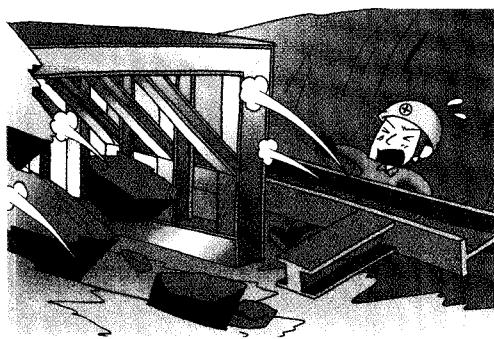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Lining Form 제작중 절토 암사면 붕괴

업종	건설업
기인물	Lining Form
생산품	철도 노반개량
재해유형	붕괴
피해정도	인적 물적



건설업
Lining Form
철도 노반개량
붕괴
사망1명

1. 재해발생개요

O(O)주(주)는 철도노반개량 공사현장 터널시점부에서 Lining Form 제작 중 좌측 절토 암사면이 붕괴되어 터널입구 굴착면 중앙의 Lining Form을 강타, 암 붕괴면 반대측 절토면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Lining Form 자자에 맞아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철도 노반개량공사 현장으로 터널 Lining Form 제작 중 Lining 철판을 실은 트레일러가 현장에 도착, 하역을 위해 트레일러에 철판고정용 체인을 풀 때 터널입구 좌측 절토 암사면이 붕괴되어 터널입구 굴착면 중앙의 Lining Form을 강타하고, Lining Form 이 우측(피재자측)으로 약 1.5m가량 밀리며 암 붕괴면 반대측 절토사면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Lining Form 상부용 주 beam에 맞아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발생원인

- (1) 지반굴착시 붕괴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비
- (2) 굴착사면 지반의 붕괴 · 토석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나. 예방대책

- (1) 지반 등의 굴착시 붕괴위험방지조치 철저
- (2) 굴착사면 지반의 붕괴 · 토석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 철저

4. 법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